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86
----------	-------

발의연월일 : 2025. 9. 25.

발 의 자 : 이해민 · 최혁진 · 김준형

강경숙 · 서왕진 · 정춘생

황운하 · 김선민 · 조인철

김우영 · 차규근 · 손명수

이학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에 「형법」상의 주요 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12.3 불법계엄’을 자행한 내란 공범 처벌을 위한 국가적 범죄에 대한 신고조차도 공익신고자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미흡한 보호조치는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용기와 참여 의지를 위축시키고, 사회 전반에 침묵과 방관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짐.

이에 본 개정안은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 제2편제2장(외환의 죄) ·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적극 보호하고자 함. 이로써 부패와 권력 남용에 맞서는 용기 있

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호가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정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제2편제2장(외환의 죄)·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 ----- ----- -----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u><신설></u>	다.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 제2편 제2장(외란의 죄) ·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